

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

인정신분증		
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		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서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		※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①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상장형) ② 카카오톡,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③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④ 정부24를 통한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'
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	초·중·고등 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	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	미취학 아동	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(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)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	사병(군인)	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·날인한 것)
	외국인	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

신분증 인정기준
① 일체 훼손·변형*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·인정** *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·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·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**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,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② 사진, 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, 성명, 발급자(직인 등)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·인정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,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·성명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·날인되지 않은 경우 ○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초본, 대학학생증, 사원증, 민간자격증, 신용카드, 운전경력증명서 등 ○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

국가기술훈격법에 의한 국가기술훈격증

< '22년 1월 기준 >

기관	종목
한국산업인력공단	기술사, 기능장, 기사(산업기사), 전문사무, 기능사 전 종목 <491종목>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	원자력발전·방사선관리기술사, 원자력기사 <3종목>
영화진흥위원회	영사산업기사, 영사기능사 <2종목>
한국콘텐츠진흥원	게임기획전문가, 게임그래픽전문가,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<3종목>
한국전파진흥원	정보보안기사·산업기사, 정보통신 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, 무선설비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, 전파전자통신기사·산업 기사·기능사, 통신설비 기능장, 통신선로 산업기사·기능사, 통신기기 기능사 방송통신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 <18종목>
한국광해광업공단	광해방지기술사·기사, 광산보안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 자원관리 기술사, 시추기능사 <7종목>
대한상공회의소	전산회계운용사1·2·3급, 워드프로세서, 한글속기1·2·3급, 비 서1·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1·2급, 전자상거래관리사1·2급, 전자 상거래운용사 <15종목>
한국디자인진흥원	서비스·경험디자인기사 <1종목>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	빅데이터분석기사 <1종목>

모바일 신분증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신분증 인정 안내

□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 예정임에 따라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○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(세부내용은 별첨 1~4 참조)

- (1)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상장형)
- (2) 카카오,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
- (3)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
- (4)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

※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(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)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적용시점 : '22. 3. 2(수)부터

※ 적용시점 이전까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불가

○ 수험자 유의사항

- 입실시간부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신분확인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분확인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문제지 및 답안카드 등 확인과 함께 2차 신분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어야 하며, 소지품 정리 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, 화면 캡처본,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2022년 2월 일

 한국산업인력공단

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안내

최근 연이은 전자·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·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·통신기기 관리를 강화·운영함을 안내·공지하오니,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1.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,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)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.

☞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·통신기기(사례)

①휴대폰, ②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, ③테이블릿,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⑤MP3 플레이어, ⑥디지털카메라, ⑦카메라 펜, ⑧전자사전, ⑨라디오,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

2. 소지품 정리시간(입실시간 이후,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) 이후 전자·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됨.
3.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“(1)신분증, (2)수험표, (3)필기구, (4)수정테이프, (5)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*, (6)전자계산기, (7)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, (8)간식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 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.

* 예시 : 아날로그시계, 단순 전자시계 등

따라서,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,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·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.

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허용 기종 안내

공학용계산기 추가 허용 기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적용대상 : 국가기술자격 (산업)기사·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
- 주요내용 :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,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

*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 시 당해 시험 정지(무효) 및 퇴실조치

****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**

<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>

연번	제조사	허용기종군
1	카시오 (CASIO)	FX-901 ~ 999
2	카시오 (CASIO)	FX-501 ~ 599
3	카시오 (CASIO)	FX-301 ~ 399
4	카시오 (CASIO)	FX-80 ~ 120
5	샤프 (SHARP)	EL-501 ~ 599
6	샤프 (SHARP)	EL-5100, EL-5230, EL-5250, EL-5500
7	캐논 (CANON)	F-715SG, F-788SG, F-792SGA
8	유니원 (UNIONE)	UC-400M, UC-600E, UC-800X
9	모닝글로리 (MORNING GLORY)	ECS-101

* 국가전문자격(변리사, 감정평가사 등)은 적용 제외

**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(ES, MS, EX 등)은 무관

[별첨1] 정부24 제공 모바일 상장형 자격증

관리번호: 202008181418-08-010076



국 가 기 술 자 격 증

· 자격번호:

· 자격종목:

· 성 명:

· 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훈위법」 에 따른 국가기술훈위자를
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· 합격 연월일: 2004년 04월 19일

· 발급 연월일: 2020년 08월 16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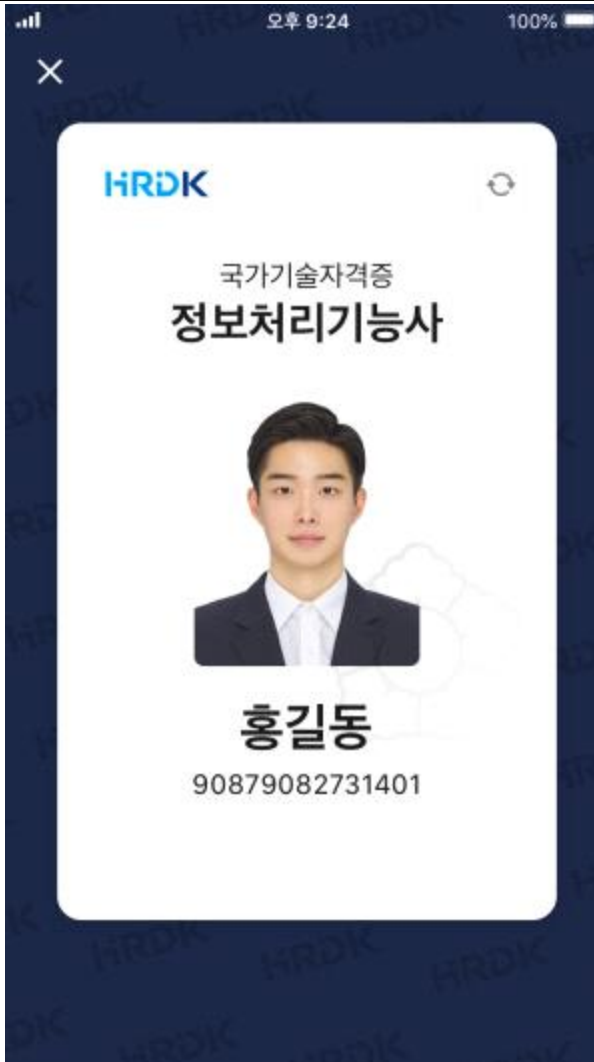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※ 본 국가기술훈위장은 「국가기술훈위법」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
취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·발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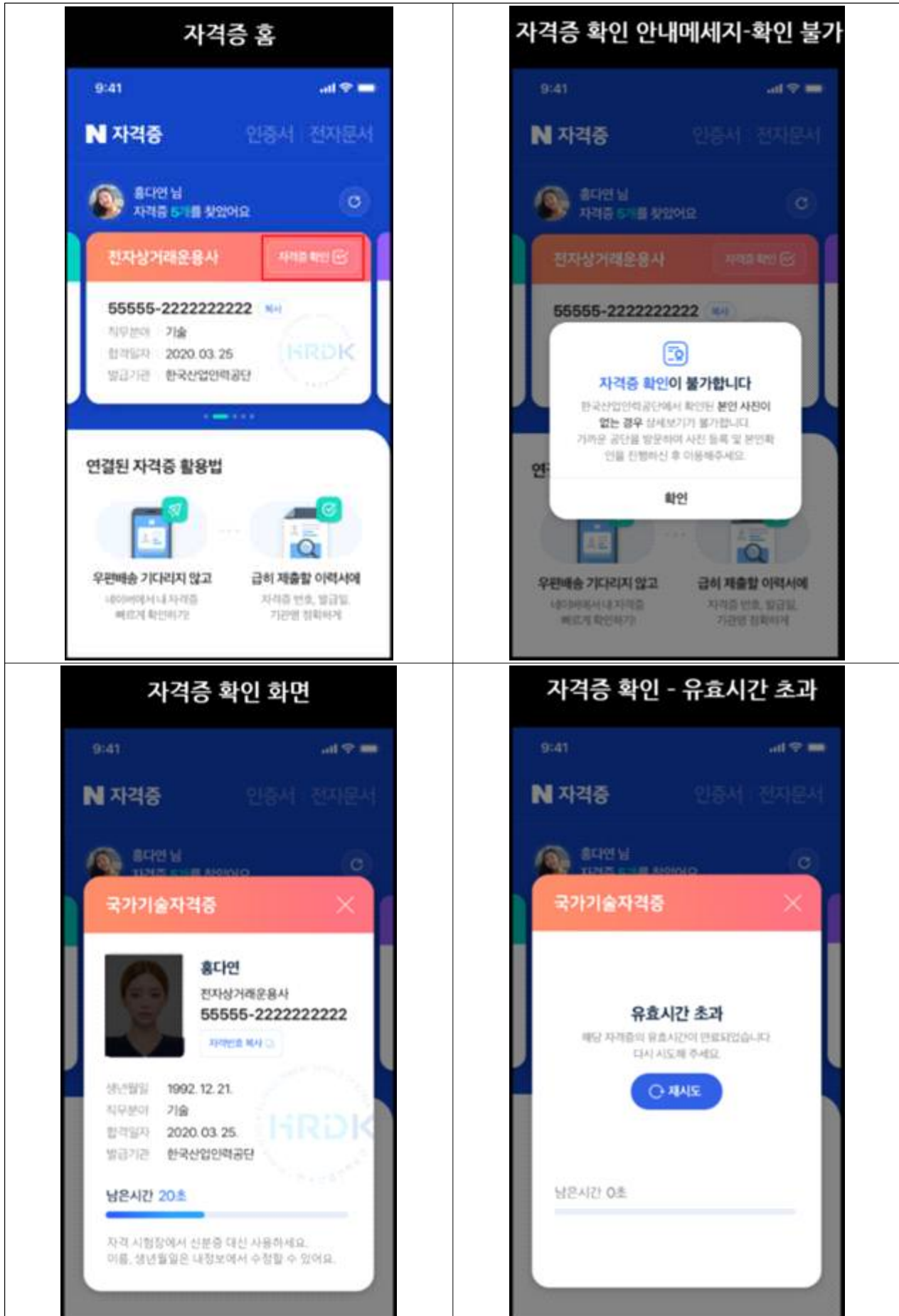
미리보기 화면입니다

◆ 본 상장형 자격장은 인위적으로 조작·발행되었으며 정본과 정위어우는 발급일로부터 80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
포털(<http://www.o-net.or.kr>)에서 조회,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2-1] 카카오 제공 모바일 상장형 자격증

	
자격증 앞면	자격증 뒷면

[별첨2-2] 네이버 제공 모바일 상장형 자격증



[별첨3]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안내

붙임1 **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**

□ **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념**

- **(개 념)**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·저장하는 운전면허증

【 모바일 운전면허증(안) 】

앱(App) 및 BI(Brand Identity)	모바일 신분증 앱 내 운전면허증 모습					
	모바일 운전면허증	상세 보기				
 【 앱스토어 등록정보 】 <table><tr><td>앱 이름</td><td>모바일 신분증</td></tr><tr><td>개발자</td><td>행정안전부</td></tr></table>	앱 이름	모바일 신분증	개발자	행정안전부		
앱 이름	모바일 신분증					
개발자	행정안전부					

- **(발 급)** 최초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,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
 - **(활 용)**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, 신원확인자는 별도 배포하는 검증앱으로 소지자의 신원정보 검증 및 확인
 - **(개인정보보호)** 사용자(신원확인자)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
- ※ 예 : (편의점) 성인여부, (렌터카) 운전면허자격 정보, (공공기관) 주민번호, 성명

붙임2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

1 육안 확인

- 육안확인시, 위변조된 이미지와 구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(뒷면)의 배경무늬 움직임과 현재시각 표시 확인 필요

2 검증앱 활용

- 공공기관 등 엄격한 신원확인을 위해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앱으로 신원확인 필요
 -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 →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정보의 진위 검증 및 확인
-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신원검증·확인이 불편한 경우, 태블릿(검증앱 설치, 와이파이 연결)과 QR리더기 구비 권장 (약 30만원 상당)

신분 확인 방법		설 명
육안확인		모바일 신분증 소지자 앱(APP)의 세부 정보를 직원이 육안 확인 ※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형태로 제공
검증앱 활용 (APP)		직원이 검증앱으로 신원 확인 -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(📱)을 다운로드·설치 후 간편하게 신원 검증 활용

- ※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신원확인방법이 필요한 경우, 시스템 연계 등 별도 협의 가능 (한국조폐공사)
- 사례 : (편의점) 기 설치된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한 성인여부 확인, (은행) 창구에 설치된 고객 단말기에 QR을 표출하고,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으로 이를 촬영하여 신원정보제공, (렌터카) 인터넷 차량렌트 신청시 온라인 운전자격 확인 등

【 검증앱으로 신원확인 방법(예시) 】

